



## 브로큰베이 교구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에 관한 법률 실무 안내서

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관련 활동을 하는 모든 기관들을 규제하는 중요한 법들이 있습니다. NSW 주 법률로는 *NSW Children's Guardian Act 2019*(NSW 아동 보호자법 2019), *Children and Young Person (Care and Protection) Act 1998*(아동 및 청소년(양육 및 보호)법 1998) 및 *Crimes Act 1900*(형법 1900)이 있습니다. 이러한 법들은 브로큰베이 교구의 Chancery 및 사목구 근로자의 역할에 영향을 미칩니다. 이 실무 안내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합니다.

### 정의:

**Chapter 16A 정보 공유**는 개인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, *개인 정보 보호법(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998)*, *보건 기록 및 정보 보호법(Health Records and Information Privacy Act 2002)*, *연방정부 개인정보 보호법(Commonwealth Privacy Act 1988)* 등에서 규정한 기관들간에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**Children and Young Persons (Care and Protection) Act 1998 (아동 및 청소년(양육 및 보호)법)**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양육과 보호 및 기타 다른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규정하는 법입니다.

**Children's Guardian Act 2019 (아동 보호자법)**은 아동 보호국(Office for the Children's Guardian)에 관한 규정을 내리고, 보호국의 기능을 규정하고, 아동의 안전, 복지 및 안녕을 보장하고, 기타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입니다.

**Fail to Protect(보호 의무 위반)**은 *Crimes Act 1900 (NSW)*(NSW 주 형법)에 의거, 아동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성인에게는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성인의 아동 학대 혹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,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,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범법 행위로 간주됩니다.

**Fail to Report(신고 의무 위반)**은 *Crimes Act 1900 (NSW)*(NSW 주 형법)에 의거, NSW 주 모든 성인은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학대를 당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거나, 의심이 가거나, 합리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범법 행위로 간주됩니다.

**Mandatory Reporting 신고 의무:** 아동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, 지역 사회 및 법무부(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)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.

**아동 관련 비종교 활동**은 아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포함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합니다.



**NSW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 (DCJ)** (NSW 지역 사회 및 법무부)는 모든 사람의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가족에 대한 기타 지원 등,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 조기 중재 및 통합을 강화/증진하는 기관입니다.

**NSW Office of the Children’s Guardians (OCG)**(이하 ‘Children’s Guardians’)는 아동 관련 업무 허가증 및 우려 행동 신고 제도를 관리하는 독자적인 법적 기관입니다.

신고 기관(**Reporting Body**)은 *아동 보호법(Child Protection (Working with Children) Act 2012)*에 의거 근로자가 *WWC 법(WWC Act)*에 명시된 행위를 했을 경우 이 사실을 아동 보호국(**OCG**)에 통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기관을 의미합니다.

**아동 관련 종교 활동**은 하느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.

**종교 사역자(Religious Minister)**는 하느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도록 안수를 받거나 혹은 봉헌한 사람을 말합니다.

**우려 행동 신고 제도(Reportable Conduct Scheme)**는 Office of the Children’s Guardian 의 감독을 받으며 관련 단체 또는 종교 단체가 신고 가능한 우려 행동이나, WWCC 소지 근로자의 신고 가능한 범죄 혐의에 대해 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단체장(주교)은 WWCC 소지자의 모든 우려 행위에 대한 주장이나 범죄 혐의를 **OCG**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**아동 관련 업무 허가증(WWCC) 면제**는 *Child Protection (Working with Children) Regulation 2013*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여 WWCC 확인이 필요없는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를 의미합니다.

**WWCC(아동 관련 업무 허가증) 소지자**는 아동 관련 업무 허가증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.

### 표 1: 브로큰베이 교구에서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법적 및 정책적 책임 (표)

3 페이지에 제시된 책임표는 브로큰베이 교구에서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 4 개 그룹의 법적 및 정책적 책임을 요약합니다. 각 그룹에 대한 설명도 제공되었습니다. 이 표는 또한 근로자의 법적 및 정책적 의무를 규정합니다. 규정된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온라인 또는 대면 Safeguarding Induction 과정 수료
- Safeguarding office(Chancery 및 사목구)에서 제공하는 정기적인 보호(Safeguarding) 훈련 참석, 본당 주임 신부가 운영
- 법적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종사자 확인
- 고용주가 실시하는 우려 행동 신고제 교육이 필요한 근로자 확인
- 우려 행동 신고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한 통보
- Safeguarding Office(Chancery 및 사목구)에 우려 행동을 보고해야 하는 직책
- '신고 의무 위반' 및 '보호 의무 위반' 적용 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



표 1: 브로큰베이 교구에서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법적 및 정책적 책임

	Safeguarding Induction	정규 Safeguarding 훈련	신고의무자 (직장에서 발생한 사건만)	우려 행동 신고 제도를 교육해야 하는 근로자	'우려 행동 신고 제도' 적용 (아동에 대한 자신의 행동 24/7 검토)	Safeguarding Office (Chancery & 사목구)에 우려 행위를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	'신고 의무 위반' 적용	'보호 의무 위반' 적용
그룹 1: WWCC 소지자(아동 관련 종교 활동)	온라인	필수	예	예	예	예	예	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예: 성직자, 기관의 보호(Safeguarding) 팀 특정 직원
그룹 2: WWCC 면제(아동 관련 종교 활동)	선택	선택	*예	N/A	N/A	선택	예	
그룹 3: WWCC 소지자 (아동 관련 비종교 활동)	온라인	필수	아니요	예	예	예	예	
그룹 4: WWCC 소지자 (종교 사역자)	대면 (임명 목회자 또는 2 주 이상 사역하는 방문 목회자 )	필수 (임명된/몇몇 은퇴한 성직자)	예	예	예	예	예	

\* 사목구는 신고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

예제

그룹 1: 아동 관련 종교 활동을 하는 WWCC 소지자

직분의 예	Safeguarding 신규 교육	Safeguarding 정기 교육	신고의무자	우려 행동 신고 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복사(Acolyte)</li> <li>• Atrium 코디네이터</li> <li>• Atrium 교사</li> <li>• CCD 코디네이터</li> <li>• 어린이 성가대 리더</li> <li>• 어린이 말씀 전례 팀원</li> <li>• 어린이 말씀 전례 지도자</li> <li>• Playgroup 코디네이터</li> <li>• 성사 코디네이터</li> <li>• 성사 팀 Facilitator</li> <li>• Senior Altar Server(제단 복사)</li> <li>• 청소년 팀 보조</li> <li>• 청소년 팀 리더</li> <li>• Music Director</li> </ul>	<p>온라인 Safeguarding Induction 과정 수료의 의무</p>	<p>Safeguarding 정기 교육 참석의 의무</p>	<p>신고의무자</p>	<p>우려 행동 신고 대상</p>



그룹 1: 아동 관련 종교 활동을 하는 WWCC 소지자(NSW 공립 학교 기준)

직책의 예	Safeguarding 신규 교육	Safeguarding 정기 교육	신고의무자	우려 행동 신고 제도	우려 행동 신고 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SRE 교사 (CCD)</li> </ul>	CCD 에서 운영하는 Safeguarding Induction 코스를 완료해야 함	CCD 에서 운영하는 Safeguarding 정기 교육에 참석해야 함	신고의무자	사목구와 NSW 공립 학교 규정 둘다 적용됨	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고용주의 책임이 있고, 이중 책임(사목구와 NSW 공립 학교 규정)을 따라야 하는 직책

그룹 2: 아동 관련 종교 활동을 하는 WWCC 면제자

직분의 예	Safeguarding 신규 교육	Safeguarding 정기 교육	신고의무자	우려 행동 신고 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어린이 말씀 전례 지도자</li> <li>어린이 말씀 전례 팀원</li> <li>준성사 코디네이터</li> <li>준성사 팀 Facilitator</li> </ul>	Safeguarding Induction 코스 완료가 필수 아님.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음	Safeguarding 정기 교육 참석이 필수 아님.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음	신고의무자*로 정의됨	우려 행동 신고 제도 대상이 아님



그룹 3: 아동 관련 비종교 활동을 하는 WWCC 소지자

Role 의 예	Safeguarding 신규 교육	Safeguarding 정기 교육	신고의무자	우려 행동 신고 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CCD 코디네이터(SRE 교사가 아닌 경우)</li> <li>• 사목구 관리자</li> <li>• 사목구 총무</li> <li>• 사목구 행정 지원</li> </ul>	온라인 Safeguarding Induction 과정 수료의 의무	Safeguarding 정기 교육 참석의 의무	신고의무자 아님	우려 행동 신고 대상

그룹 4: WWCC 소지자(종교 사역자)

직분의 예	Safeguarding 신규 교육	Safeguarding 정기 교육	신고의무자	우려 행동 신고 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제</li> <li>• 목회자</li> </ul>	Safeguarding 대면 Induction(단계화된 프로그램) 이수 필수	매년 Safeguarding 정기 교육 필수 참석	신고의무자	우려 행동 신고 대상



### 참고 문헌

아래 참조 문서는 교구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*Children and Young Persons (Care and Protection) Act 1998*

*Children's Guardian Act 2019*

*Crimes Act 1900 (NSW)*

*Child Protection (Working with Children) Act 2012*

*Child Protection (Working with Children) Regulation 2013*

정책 -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대응(Policy Responding to Reportable Conduct)

정책 - 심각한 피해의 위험 신고 의무(Policy Risk of Significant Harm Mandatory Reporting)

정책 - 아동 관련 업무 허가증(Working With Children Check Policy)

정책 - 불만 처리 프레임워크(Complaints Handling Framework)

안내 자료 -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대응((Responding to Reportable Conduct)

안내 자료 - 심각한 피해의 위험 신고(Fact Sheet Risk of Significant Harm - Mandatory Reporting)

비디오 - 심각한 피해의 위험 신고 의무 가이드(Risk of Significant Harm Mandatory Reporting Guide)

### 추가 정보

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피해 아동에 대한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ffice for Safeguarding (Chancery)에 이메일

[safeguarding@bbcatholic.org.au](mailto:safeguarding@bbcatholic.org.au), 전화 **02 8379 1605**, NSW Office of the

Children 웹사이트 <https://ocg.nsw.gov.au/> 또는 NSW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 웹사이트 [www.dcj.nsw.gov.au](http://www.dcj.nsw.gov.au) 를 방문하세요.

### 개정 / 수정 이력

날짜	버전	현재 제목	변경 사항 요약	승인 날짜	시작 날짜
01/07/2020	1.	브로큰베이 교구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와 관련된 법률 실무 안내서	신규	2020년 7월	2020년 7월
04/01/2022	2.	브로큰베이 교구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와 관련된 법률 실무 안내서	WWCC 를 필요로 하는 직책 규정 및 역할 목록 업데이트		



13/03/2024	3.	브로큰베이 교구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와 관련된 법률 실무 안내서	명칭 수정; 우려 행동 신고 의무제 정의를 명확히; 2 주 이상 사역하는 방문 성직자에 대한 교육 항목 추가		
------------	----	---	--	--	--

### 승인 날짜 / 개정 일정

승인: Ana Kosi, 보호(Safeguarding) 관리자 (Chancery 및 사목구)

승인 날짜: 2024년 3월 14일

검토 예정일: 2026년 3월 14일